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23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3월 20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03.20. ~ 2023.04.02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강현아	1986.00.29.	0178200274100008850	₩47,790,000	경기도 안성시 대학 6 길
2	신정호	1966.00.14.	0178200274100008838	₩12,39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 34 번길
3	(합)이훈 특산물	150113-0008591	0178200274100000155	₩41,04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 대로 753번길 42, 1층 6호
4	(합)와이즈앤 플라워	151213-0001849	0178200274100000160	₩28,728,000	충북 제천시 신백동 203-2, 2층
5	권순성	1982.00.20.	0178200274100008238	₩19,116,000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0 번길
6	주식회사 무송산업개발	151111-0039119	0178200274100003472 0178200274100003476	₩26,550,000 ₩13,275,000	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
7	길재준	1966.00.26.	0178200274100004415	₩344,000	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89 번길
8	(주)엔터웨어랩	160111-0189228	0178200274100004416	₩10,743,900	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15, 308호
9	주식회사 시리우스	150111-0220462	0178200274100003301	₩4,229,100	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31, 604호
10	제이텔레콤 주식회사	150111-0147913	0178200274100008228 0178200274100008829	₩11,299,500 ₩11,299,500	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1, 408동 502호
11	김전수	1965.00.01.	0178200274100008241	₩31,86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5 번길
12	김광태	1991.00.20.	0178200274100003479	₩10,62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 58 번길
13	강석건	1970.00.22.	0178200274100003491	₩13,381,200	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 1 길
14	이안규	1972.00.30.	0178200274100003494	₩31,860,000	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충로 16 번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5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